

내항선사, 유류세보조금 신청하세요!!!



- ◆ **지원대상** : 「해운법」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, 내항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운항한 선박에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(MDO, MF계열 블랜딩유 포함)에 한하여 지급
※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(해양수산부고시 제2019-157호, 2019. 10. 10)
 - ◆ **지급단가** : 1ℓ당 345.54 원 (2020. 10월 현재 기준, 변동가능)
 - ◆ **신청기간** : 매분기 1일 ~ 5일 (우리청 홈페이지 공지)
 - * 3월 신청(전년도 12월~2월 사용분), 6월(3월~5월 사용분), 9월(6월~8월 사용분), 12월(9월~11월 사용분)
 - ◆ **신청방법**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- * 결정액 확정 후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(www.gosims.go.kr)에 사업등록 등 필요
 - ◆ **구비서류** : 신청서, 인수확인서¹⁾, BDR²⁾, 출하전표³⁾,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
 - * 외항으로 자격변경 운항, 항계내 운항, 예·부선 결합 운항 등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

신청서(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)

1) 인수확인서

2) BDR

3) 출하전표

- ◆ **처리절차** : 보조금 신청 → 서류검토 → 심사(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, 승선 점검 등)
→ 보조금 결정액 통보 → e나라도움 접속, 사업등록 → 보조금 수령
 - ◆ **문의사항**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☎ 051-609-6313